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수탁 희망업체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마련으로 시민 이해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환경자원화시설 주소 정비(안 제2조)
-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위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안 제6조)
 - 당초 : 동일분야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기관
 - 변경 :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기관

- 반입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자치법규 인용 조항 변경(안 제13조)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구미시 폐기물 관리 조례」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및 회계과와 합의되었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5. 검토의견

- 본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자원화 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수탁 희망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